

자 산 보 관 계 약 서

2026. 4 . 8 .



자산보관계약서

본 자산보관계약서(이하 "본 계약")은 2026년 4월 8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다.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아이콘삼성)에 두고 있는, 주식회사 코크랩제7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위탁자")
-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그 주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16층에 두고 있는, 대신자산신탁(주) (이하 "수탁자").

전 문

-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에서 정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이하 "영업인가") 또는 영업등록(이하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로부터 필요한 영업인가 취득 또는 등록 완료를 전제로 위탁자는 수탁자를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할 자산보관기관으로 선임하며 수탁자는 자산보관업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이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및 적용)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자산보관업무(이하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의 서문, 본문 등에서 정의된 용어들에 추가하여, 본 계약에서 사용된 아래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지고, 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고 사용되는 용어들은 부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위탁자산"은 위탁자의 자본금과 차입금의 합계액 또는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기타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한다.
-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위탁자와의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대한 투자, 운용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보관업무의 범위)

수탁자가 위탁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자산보관업무의 범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동산의 보관 및 관리

1.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존 및 보관
2.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등기 이전이 필요할 경우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제3자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는 업무
3.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탁부동산의 등기권리의 기재 사항 변경(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업무
4. 위탁자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른, 임차인 또는 관할관청 등에서 요청하는 확인서 발급 업무
5. 기타 본 항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② 부동산의 매각 기타 처분 등에 따라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및 관리

1. 위탁자산인 부동산의 매각 기타 처분에 따라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의 수령, 자산관리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지급, 이체 및 보관
2. 위탁자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요청 시 현금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3.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부동산의 처분대가 기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정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으로서 수탁자가 수취하는 현금의 보관, 지급, 배분 관련 업무

③ 해산(청산) 관련 업무

1.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 자산관리에 필요한 관련 업무
2. 기타 본 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제4조(자산보관 및 일반 책임)

- ① 수탁자는 부투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자산보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수탁자의 고유 자산 및 제3자로부터 위탁된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보관업무 외 기타 운용방법은 본 계약에 따라 사업건별로 체결되는 담보신탁 등 각종 신탁계약에 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권리)

- ① 수탁자는 부투법 등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문서 또는 증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작성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소유자로서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를 포함한 제반비용(신탁보수 포함)이 수탁자의 재산에서 지급되었을 경우 위탁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자료의 유지 및 제공)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자산보관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부투법 및 기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지정하는 서류를 수탁자의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자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의무)

- ① 수탁자는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탁자로부터 합리적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자산보관과 관련된 부투법 및 관련 법령상 보고, 통지 및 공고 의무의 준수를 위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된 행위)

- ① 수탁자(수탁자의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위탁자로부터 보관을 위해 위탁받은 자산을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자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2.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자산보관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및/또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동 정보 또는 자료를 자산보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3. 부투법을 포함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동 법령에 따라 금지된 기타 행위
- ② 수탁자는 제3자와 위탁자와의 사이에 이해 충돌이 야기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외관상 그러한 이해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부동산의 신탁)

- ① 위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 위탁자가 취득하는 별첨 2.의 부동산(이하 “위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방법으로 위탁자산의 보관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동 부동산신탁에 대한 수탁자가 된다.
- ② 제1항의 자산보관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 별도로 체결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에 따르기로 한다
- ③ 위탁자가 별첨 2.의 부동산 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본 계약의 별지로 부동산 목록과 주요 신탁계약 내용을 기재하여 별첨한다.

제10조(신탁의 목적)

제9조에 따른 위탁부동산의 신탁을 통해 수탁자는 위탁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유지 및 관리한다.

제11조(수익자)

- ① 위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한다.
- ③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수익자를 교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다.

제12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위탁자가 위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지체 없이 경료하는 데 필요한 위탁부동산에 대한 모든 문서가 수탁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탁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포함하는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13조(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

- 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위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의무 및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첨 1.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관리에 대한 책임 및 관련 업무 내용을 정하여 이에 따라 관리하기로 한다.
- ② 위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위탁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
- ③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위탁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징수, 위탁부동산의 소유 및 사용을 제한하는 사업허가에 관한 통지 및 이에 상응하는 관계당국의 행정조치 및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한다.
- ④ 위탁부동산 및 본 계약에 따른 보관업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며, 본 계약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절차(소송 행위를 포함)를 이행한다.

제14조(신탁원본)

- ① 신탁원본은 위탁부동산, 위탁부동산에 대한 대위변제의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구성한다.

- ②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파손이나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몰수의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신탁수익)

신탁수익은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제16조(신탁수익의 양도)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신탁수익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자산관리보수 등)

본 자산보관계약체결 후 체결되는 담보신탁계약 등의 세부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자산관리보수를 포함하여 담보신탁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할 신탁보수의 요율은 수탁자의 내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각 사업별 신탁계약 체결 시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위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보수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상호간 일체의 손해, 손실 및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8조(비용)

위탁부동산의 신탁 시 등기비용, 세금, 부담금 등과 같은 추가 비용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동 업무를 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추가 비용에 대한 변제를 상세한 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단, 수탁자는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위탁자로부터 비용지출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진술 및 보장)

-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부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 ② 본 계약의 기간 동안,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호를 진술하고 보장한다.
 1. 수탁자는 부투법상 자산보관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의 인가에 따라 적법하게 조직되어있으며 부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2. 수탁자는 부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며, 수탁자는 부투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충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임직원이 그러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20조(책임 및 면책)

- ① 위 수탁자는 부투법을 포함하는 관련 법령 및 본 계약에 의한 부동산신탁계약상 업무의 이행과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책임, 청구 또는 합리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수탁자는 ①항에 따른 책임을 제외하고 자산보관업무 과정에서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양도 및 위임)

-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 및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 ② 수탁자가 자산보관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임의 이유, 범위 및 조건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각 당사자, 그 승계인 및 허락된 양수인의 이익이 된다.
- ④ 수탁자가 제3자와 합병하거나, (주요 자산의 양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분할(또는 분할 후 합병)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합병, 사업양도, 분할 후, 새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본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조건 하에 합병, 사업양도 또는 분할을 이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또는 관련법령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자산보관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위탁자 및 위탁자의 운용에 관한 비공개된 정보 및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지시 및 통지)

- ① 본 계약에서 정한 지시 및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소정의 승인권자의 서명 혹은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직접 배달(physical delivery), 인편 배달(courier), 메일, 팩스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전자전송 방식에 의해 전달한다. 단, 메일, 팩스 또는 전자전송 방식에 의한 지시 및 통보가 담당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 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시 또는 통보의 경우 본 계약 당사자들은 당해 회사의 법인인감에 갈음하여 별도의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용도를 명시한 인감신고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 ③ 제1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지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접수시점을 그 효력발생시점으로 본다.

제24조(효력발생일)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이하 “효력발생일”) 단,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까

지 제9조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계약 체결에 소급하여 해제된다.

제2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자의 (i) 청산종결 등기일, (ii) 담보신탁계약의 종료일, 또는 본 계약 제27조에서 정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도해지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한다.

제26조(계약의변경)

- ① 본 계약 당사자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부동산의 일부 및 전부를 처분하거나, 새로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내부의사결정체제에 의한 수탁결정을 전제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담보신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위탁부동산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
 - ㄱ. 그 이유를 불문하고 (i) 위탁자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 위탁자가 위탁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자산이 모두 처분되고 난 후 위탁자가 청산되는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의 서면 해지 통지를 상대방 당사자가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 ㄴ. 수탁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이 위탁자의 서면 시정요구 통지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의 서면 해지 통지를 수탁자가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 ㄷ. 위탁자에 의한 본 계약의 위반이 수탁자의 서면 시정요구 통지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하여, 수탁자가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한 경우, (i) 위탁자가 새로운 자산보관회사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거나, (ii) 위탁자가 수탁자의 서면 해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 ㄹ. 수탁자의 부투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취소, 기타 자산 보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의 서면해지 통지를 수탁자가 수령한 날에 본 계약은 해지된다.
 - ㅁ. 본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가 아닌 중도계약해지 또는 만기일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자산보관업무에 관한 해지일까지의 보수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자가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수탁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의 보수는 제17조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본조에 따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본 계약 제20조(책임 및 면책)와 제22조(비밀유지)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28조(해지의 효과)

본 계약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본 계약의 해지 시 위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의 명의로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해지한다.
- ② 결산보고서 및 자산보관현황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취득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한 사항은 위탁자에 의해 이미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사항은 결산보고서에서 생략될 수 있다.
- ③ 수탁자가 위탁자의 자산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는 수탁자의 내부자료를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 ④ 위탁자의 새로운 자산보관회사가 위탁자의 자산보관업무를 즉시 인계할 수 있도록 위탁자가 요구하는 필요한 제반조치(업무이관에 협조할 인력확보 등)를 협조한다.
- ⑤ 본 계약서의 간인은 수탁자의 천공기로 본 계약서에 부호를 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한국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8일

위탁자("갑")

상 호 : 주식회사 코크랩제7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삼성동)
대표이사 : (주)코람코자산신탁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0917230



수탁자("을")

상 호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대표이사 : 김 송 규 (인)
법인등록번호 : 110111-7124665



별첨 1.

위탁자산 관리의 책임 및 범위

1. 위탁자

- ①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징수 등의 임대차관리
- ② 시설유지, 청소, 방역, 경비, 보수, 화재보험가입 등 위탁부동산의 보존
- ③ 수익금 관리 및 운용
- ④ 위탁부동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 ⑤ 위탁부동산에 관한 민원, 소송에 대한 처리
- ⑥ 수탁자가 이행하는 관리업무를 제외하는 일체의 관리업무

2. 수탁자

- ① 등기부상 위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및 관리
- ②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부동산 보관, 처분 등 업무
- ③ 기타 자산보관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④ 본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 등 권리와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무



별첨 2.

위탁부동산

1. 본건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19 대 1263.1m²

2. 본건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19, 한누리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3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층 453.37m²

2층 478.39m²

3층 508.63m²

4층 508.17m²

5층 508.17m²

6층 508.17m²

7층 508.17m²

8층 508.17m²

9층 508.17m²

10층 508.17m²

11층 508.17m²

12층 508.17m²

13층 508.17m²

14층 508.17m²

15층 508.17m²

지하1층 847.43m²

지하2층 957.41m²

지하3층 957.41m²

지하4층 957.41m²

지하5층 957.41m²

지하6층 792.32m².